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004

발의연월일: 2024. 7. 19.

발 의 자:조정훈·최수진·서명옥

박충권 • 김용태 • 정성국

김대식 · 서지영 · 박형수

최형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 다양한 학교유형에 대한 규정을 두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특수학교의 경우, 학교 유형을 다양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부재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재능 개발을 위한 전문적 교육에 한계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학교(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특성 화특수학교의 장에게 학생 선발권을 부여함으로써 재능 있는 특수교 육대상학생이 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각 자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 3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 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를 "제4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제3항에 따른 지원 또는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를 "제4항에 따른 위탁교육·제5항에 따른 지원 또 지원 또는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로 한다.

-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이하 "특성화특수학교"라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절차는 교육부렁으로 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제2항에 따라"를 "제6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① (생 략)	위탁교육)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
	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
	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
	시하는 특수학교(이하 "특성화
	특수학교"라 한다)를 지정·운
	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성화특
	수학교의 지정 절차는 교육부령
	으로 정한다.
<u><신 설></u>	③ 제2항에 따른 특성화특수학
	교의 장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u>②</u> (생 략)	$\underline{4}$ (현행 제 2 항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u>⑤</u> 제4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교육	
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	
달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ㆍ제	<u>⑥</u> 제4항에 따른 위탁교육·제

3항에 따른 지원 또는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저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매우 불량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현저한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취학하고 있는 교육기관외 교육기관에 취학할 수 있다.

② (생 략)

5항에 따른 지원 또는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세7조(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① 제6조제4항에 따라
(1) 1/10-1-1/11-18 11 1/19
② (현행과 같음)